08-30 (통권 308호)
2008.8.8

# 韓國經濟週評

■ 7대 광역 경제권 개발 계획의 성공 조건
- 지역 특구 4년 평가와 과제

現代經濟硏究院
HYUNDAI RESEARCH INSTITUTE

Better than the Best!

## 週間 主要 經濟 指標 (8.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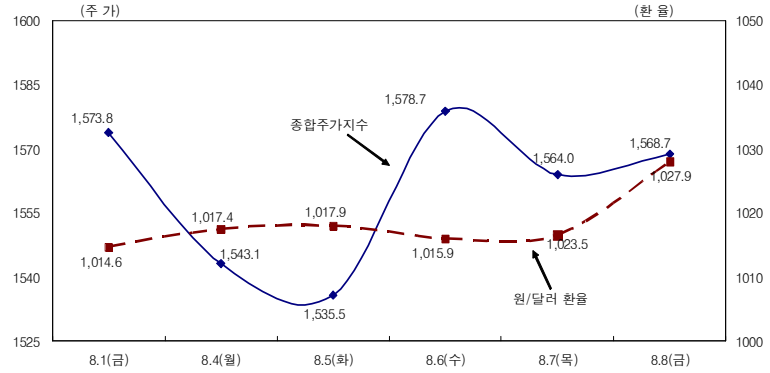

##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 1

□ 7대 광역 경제권 개발 계획의 성공 조건

- 지역 특구 4년 평가와 과제 ..... 1

주간 경제 동향 ..... 22

□ 실물 부문 : 생산자 물가 상승세 지속 ..... 22

□ 금융 부문 : 원화 환율 상승 압력 고조 ..... 23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3669-4032, bkyoo@hri.co.kr)

□ 경제연구본부 : 김 동 열 연 구 위 원 (3669-4112, dykim@hri.co.kr)

## *Executive Summary*

### □ 7대 광역 경제권 개발 계획의 성공 조건 : 지역 특구 4년 평가와 과제

#### 1. 지역특구의 운영 현황

지난 7월21일 발표된 **새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권역별 발전에 역점**을 두는 것이다. **권역별 발전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이 수립되어야 가능**해진다. 지난 참여정부에서는 지역특구제도를 통해 지역별 투자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였다. 본 자료에서는 **참여정부에서 추진된 지역특구제도에 대한 성과 검토를 통해, 새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지역특구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4년3월 지역특구법의 제정**과 더불어 도입되었다. **4년여 지난 2008년7월 현재 91종의 규제특례가 적용 가능하고, 전국에 걸쳐 80 개 지자체에 102 개 지역특구가 지정** 운영되고 있다. 제도화 및 정착단계에 진입한 지역특구제도는 '순창 고추장특구' 등과 같이 향토자원 및 관광시설 관련 특구로 편중되어 있고 ,최근에는 그 지정 규모가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규제특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2. 지역특구의 성과와 한계

**(특구의 경제적 성과 미미) 예산지원 없이 규제완화만으로 소득의 증가를 기록한 특구도 일부 있지만, 특구 지정의 경제적 성과가 아직까지는 매우 미미한 형편이다.** 예를 들면, 고창의 복분자특구와 문경의 오미자특구에서는 특구 지정 전후 매출액이 2배가량 증가했으나, 영동의 포도특구 ,충주의 사과특구 ,안동의 산약마을특구는 매출액 변화가 미미했고, 김천의 포도특구와 논산의 청정딸기특구에서는 매출액이 오히려 떨어졌다. 6개 교육특구를 비교한 결과 ,특구 지정 이후에 오히려 사설학원의 수강생 비율이 증가한 경우가 5개나 되어 ,저소득층 학부모들의 사교육부담을 덜어준다는 당초의 목표와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규제특례의 실효성 미흡) 지역특구에 적용가능한 규제특례를 초기 7종에서 최근 91종으로 늘렸지만, 각 특구들이 지금까지 적용을 신청한 규제특례는 45종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도 24종만 실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규제특례의 활용빈도를 살펴보면, 지역특화사업의 본질적 내용과는 거리가 먼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 특례', '도로교통의 제한', '식품표시기준 고시권한의 이양 '등의 활용빈도가 높아서, 규제특례의 활용이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구의 다양성 부족) 제도 도입 4년여 만에 102개의 특구를 지정 운영하고 있어 특구의 제도화에는 성공했으나, 유형별 다양화와 내실화에는 아직 미흡한**

**형편이다.** 전체 102개의 특구 중에서 지방의 특산물을 활용한 향토자원진흥 특구(45개)와 관광-레포츠 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특구(20개)가 전체의 2/3에 달하며, 지역적으로는 대도시와 수도권의 활용도가 떨어져, 특구의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한 실정이다.

**(민간 역량의 활용 부족) 기초 자치단체 주도형 지역특구의 정착을 통해서 지자체의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는 데는 기여했지만, 민간기업과 비영리 (NPO)법인의 특구신청을 불허함으로써, 민간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유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민간 기업이 특구에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규제특례의 범위가 협소함에 따라, 기업들이 다수 몰려있는 대도시 및 수도권의 특구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 아울러, 기업의 풍부한 자금을 유인하지 못함으로써, 지역특구의 재원조달에도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

## 3. '자율적 규제개혁특구'로의 전환 방안 모색

이상으로 **지역특구가 4가지 측면(①특구의 경제적 성과, ②규제특례의 실효성 ③특구 유형의 다양성, ④민간 역량의 활용)에서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지적했다. 지역특구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개선해가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기업이 특구를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투자와 경제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칭)**'자율적 규제개혁특구'로의 본질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과 중복적인 지역개발 지원제도로 인해 '지역특구' 제도를 일부 개선하더라도 '지역특구'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어렵다.**
**둘째, 지역특구제도의 추진체계가 특정부처의 개별 사업으로 위상이 저하됨에 따라, 특구사업의 추진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에 있다.**
**셋째, 규제개혁에 방점이 찍혀져야 하는데 현재의 지역특구법은 지역개발에 갇혀 있다.**
**넷째, 우리가 벤치마킹한 일본은 지역의 이해관계에 매몰될 수 있는 '지역개발'이 아니라, 국가적 핵심과제로서의 '규제개혁'에 집중하여 성공했다.**

따라서, **지역특구를 (가칭)'자율적인 규제개혁특구'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제도의 성패를 핵심적으로 좌우하는 '규제특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첫째,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규제특례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아울러 의료-복지, 산업-연구개발, 교육 분야의 특구를 지원할 수 있는 특례를 중심으로 발굴해야 한다.** 현재는 102개 지역특구 중 2/3에 가까운 특구가 특산품 등 향토자원 중심이며, '특구'라는 브랜드를 홍보용으로 확보하기 위한 형식적인 '특구' 신청과 형식적인 '규제특례'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둘째, 지역특구에서 성공적인 규제특례를 전국의 자치단체에 확산하여 동일하게 적용하는 규제특례의 전국화를 도입해야 한다.** 우리가 벤치마킹한 일본의 경우, 전국화된 120개의 규제특례를 포함하여 모두 211개의 규제특례를 적용 가능하도록 제시한 바 있다.

**셋째, 정부기관 주도의 규제특례 수요조사를 민간과 경제단체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에서 제안한 (가칭)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시범과제'를 '특구'에 적용해보고 성공적일 경우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

## 4. '자율적 규제개혁특구'의 성공요인

위에서 **'자율적 규제개혁특구'의 핵심 성공요인이 바로 '규제특례'의 실효성**에 달려 있음을 살펴봤으며, 이하에서는 **그 밖의 제도적 성공요인**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자율적 규제개혁특구의 소속을 총리실로 이전하고, 총리실 산하의 규제개혁위원회'와 통합(또는 역할 분담)을 검토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규제개혁특구가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규제완화 및 투자활성화의 창구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회에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제대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둘째, 각 지역별로 특구의 성공을 지원하는 産-學-硏-官 네트워크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해야한다.** 특구의 운영주체가 지자체 중심이다 보니 우수한 인력 및 자금 조달, 경영노하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추진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농민, 기업, 연구소, 학교, 지자체간 유기적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민간의 역량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업과 민간단체도 규제개혁특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지자체의 역량으로 수행하기 힘든 '특화사업'은 기업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유인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

**넷째, 중복되는 복잡다기한 지역개발 정책과 특별법의 정리가 시급하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지식경제부의 '지역특구' 제도와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농림부의 '향토산업육성사업', '원예과수브랜드육성사업' 등과의 중복을 피하고,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부서별, 정책별 교통정리가 요구된다.

**다섯째,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재원조달의 문제점을 일부 해소하고, 지방소비세 또는 고향세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우리의 지역특구가 부진했던 이유 중 하나도 '재원조달'이 충분치 못했거나, 재원조달 계획도 없이 특구 지정부터 시도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예산지원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노리고, 아울러 지방소비세(또는 고향세)의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 < 7대 광역 경제권 개발 계획의 성공 조건 >

- 지역 특구 4년 평가와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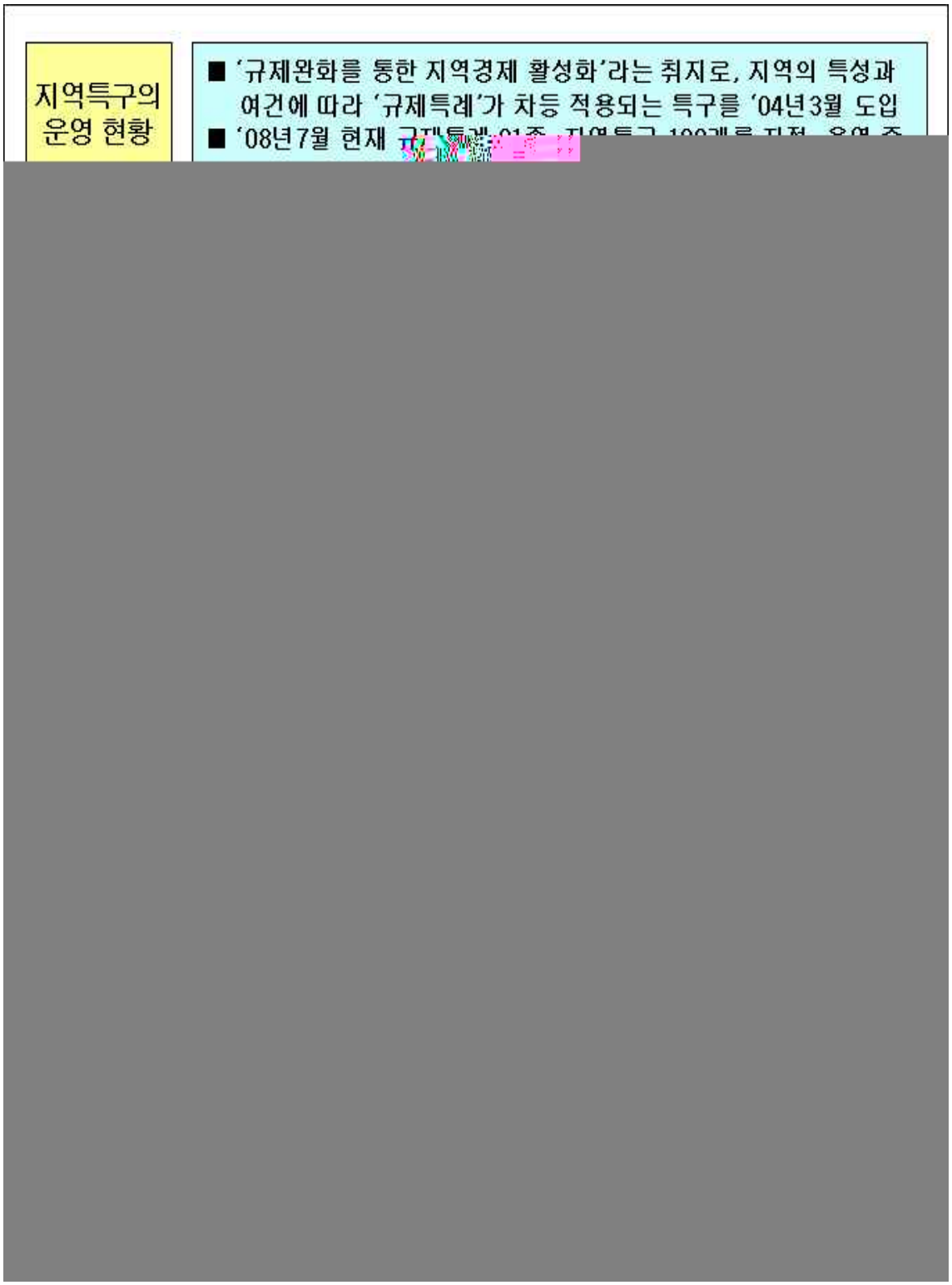

## 1. 지역특구의 운영 현황

□ 지난 7월21일 발표된 새 정부의 지역발전정책[1]은 권역별 발전에 역점을 두는 것으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의 수립이 전제되어야 가능함. 본 자료에서는 참여정부에서 추진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구' 제도의 성과 분석을 통해, 새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함.

○ (지역특구의 취지) 정부의 예산 지원이 없는 대신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자율적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를 도입함.

<그림 1> 지역특구제도의 운영체계 (2007년말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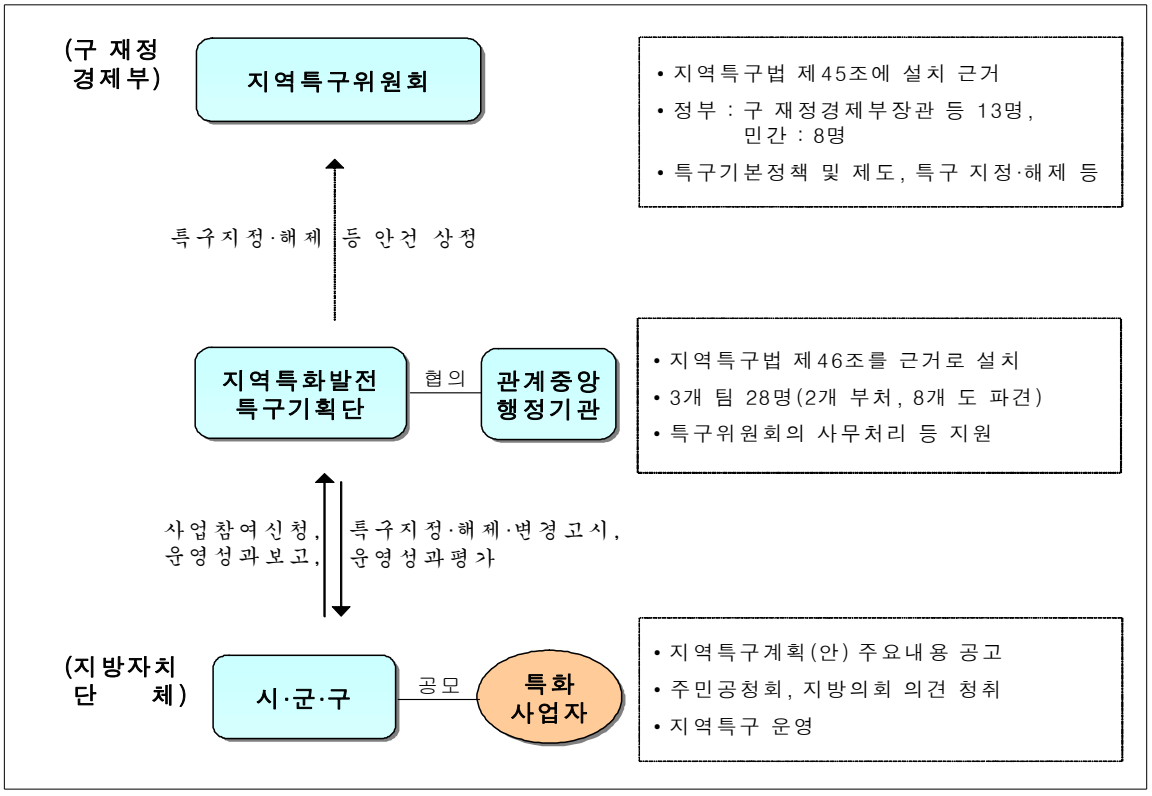


자료 : 구 재정경제부 지역특구기획단

1) 지난 7월2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 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토지수용권과 도시개발권을 부여하고, 전국을 '7대 광역경제권'과 '4대 초광역개발권'으로 나누어 다원적으로 개발하며, 혁신·행정·기업도시는 일부 보완을 거쳐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결의함.

- 전국에 걸친 일률적 규제완화,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지역개발, 선심성 예산을 활용한 경쟁적 중복투자라는 기존의 지역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동시에 키워줄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되었음.
  ·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경제발전을 도모"[2]함.

**○ (경과) '04년3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지역특구법') 이 제정되고 4년이 지난 '08년7월 현재 102개의 지역특구가 지정, 운영되고 있음.**

-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7대 과제 중 하나로 '지역특구'가 선정되었으며, 2003년10월 지역특구에 적용될 69종의 규제특례를 확정한 후, '04년3월22일 '지역특구법'이 제정 공포되었으며, '04년9월부터 본격 시행됨.
  · '08년7월 현재 91종의 규제특례가 규정되어 있으며, '순창 고추장특구', '고창 복분자특구', '제주 마라도특구' 등 102개의 지역특구가 80개 시·군·구에 걸쳐 지정 운영되고 있음.

**○ (지정 현황) '08년7월 현재 102개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 현황을 유형별, 지역별, 연도별로 살펴보면 아래 <표 1>, <표 2>, <표 3>과 같음.**

- 먼저, 유형별로 보면, 지역특산품과 관련된 향토자원 특구가 45개(44.1%)로 가장 많으며, 관광 또는 레포츠시설을 위한 특구가 20개(19.6%)로 이 두 분야를 합하면 65개(63.7%)에 달하여, 특정 분야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어서 교육특구가 15개(14.7%), 산업-연구 분야 특구 10개, 유통-물류분야 특구 9개, 의료-복지 관련 특구 3개로 비중이 낮은 형편임.

<표 1> 유형별 특구지정 및 운영 현황

| 특구유형 | 향토자원 진흥 | 관광-레포츠 | 교육 | 산업-R&D | 유통-물류 | 의료-복지 | 합계 |
|---|---|---|---|---|---|---|---|
| 건수 | 45 (44.1%) | 20 (19.6%) | 15 (14.7%) | 10 (9.8%) | 9 (8.8%) | 3 (2.9%) | 102 (100.0%) |

자료: 구 재정경제부 지역특구기획단 자료를 기초로 재작성

2)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약칭 '지역특구법')"의 제1조(목적) 조문.

- 시도별 지역특구 현황을 보면, 경북이 19개로 가장 많고, 전남 13개, 충북 12개로 그 다음이며, 울산과 제주는 각각 1개씩이고, 대전과 광주는 없음.
  · 대도시 및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용이 저조함을 알 수 있음.

<표 2> 지역별 특구지정 및 운영 현황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합계** |
|---|---|---|---|---|---|---|---|---|---|---|---|---|---|---|
| 3 | 3 | 3 | 3 | 1 | 6 | 6 | 12 | 10 | 11 | 13 | 19 | 11 | 1 | 102 |

자료: 구 재정경제부 지역특구기획단 자료를 기초로 재작성

- 연도별 지역특구 지정 현황을 보면, 2005년도에 6회에 걸쳐 30개의 특구가 지정되었으며, 2008년7월말 현재 모두14회에 걸쳐 102개의 특구가 지정되었음.
  · 2007년도 후반기 이후 지역특구의 지정빈도와 규모가 크게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3> 연도별 지역특구 지정 현황

|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7월 | 합계 |
|---|---|---|---|---|---|
| 지정 횟수 | 6회 | 4회 | 3회 | 1회 | 14회 |
| 지정 특구 | 30개 | 31개 | 25개 | 6개 | 102개 |

자료: 구 재정경제부 지역특구기획단 자료를 기초로 재작성

○ **(차이점) 지역특구가 기존의 경제자유구역[3] 및 관광특구[4]와 다른 점은 (1)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규제특례를 요청하는 등 사업을 기획하고 주도하며, 아울러 (2)재정 및 세제를 활용한 예산지원이 없다는 것임.**

- 지역특구는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경제자유구역은 국제공항·항만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유치와 물류 중심지화가 목적이며, 관광특구는 심야영업 규제완화를 통한 관광활성화를 목적임.

3) "경제자유구역"이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써, 이를 통해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도모함. '08년 7월 현재 인천, 부산-진해, 광양, 황해, 새만금-군산, 대구 등 6곳이 지정됨.

4)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 연간 10만명(서울은 50만명) 이상의 지역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과 영업시간 자율화 등의 혜택이 있음. '07년말 현재 경주, 설악, 유성, 해운대, 이태원 등 13개 시도에 25개 관광특구가 지정되어 있음.

**○ (규제 특례) 지자체에서 특구계획을 수립할 때 특화사업에 적용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규제특례는 총 91종으로서, 토지이용계획 결정의제 12종, 인허가 의제 17종, 특화사업에 대한 규제완화 53종, 행정권한 위임 8종임.**

- 이들 규제특례의 종류와 내용은 아래 <표 4>와 같으나, 특례가 형식적이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5]이 제기되고 있음.

<표 4> 지역특구에서 활용 가능한 규제특례의 종류와 내용

| 특례의 종류 | 특례 수 | 특례의 내용 및 예시 |
|---|---|---|
| □ 토지이용계획의 결정 의제 | 12종 | ▷ 특구 지정이 되면 다음 12종의 계획 등을 결정 의제<br>- 도시관리계획 결정, 수자원보호구역 지정, 관광단지 지정,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산업단지 지정,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또는 해제 등 |
| □ 인허가 의제 | 17종 | ▷ 특구 지정이 되면 다음 17종의 인허가를 의제<br>- 초지전용 허가, 산지전용 허가, 농지전용 허가, 하천 점용 허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사도개설 허가 등 |
| □ 특화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 53종 | ▷ 특화사업에 대해 다음 53종의 규제를 완화<br>- 옥외광고물 설치 및 표시에 관한 특례<br>- 특화사업에 대해 건폐율·용적률 상한을 150%까지 확대<br>- 한약관련 특구의 도매상에는 한약사를 공동으로 배치 가능<br>- 농업 특구에서는 종자업의 묘포장 확보기준을 1/2로 완화 |
| □ 행정권한을 위임 | 8종 | ▷ 시도의 행정권한을 시군구로 위임<br>- 식품표시기준 고시, 등록체육시설업의 등록, 식품접객업 영업시간 제한, 자동차 운행제한 명령 등 |

자료: 감사원(2008.5) 자료를 기초로 재작성

**○ 이상과 같이 4년 이상 경과한 지역특구제도가 향토자원 및 관광시설 관련 특구로 편중되어 있으며, 최근 지정 빈도와 규모가 크게 줄어들고 있음. 아울러, 규제특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됨.**

- 따라서, 지역특구 4년의 성과와 한계를 엄밀히 재평가하고, 그 개선방안의 하나로서 '규제개혁특구'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함.

5) 감사원(2008.5),'감사결과 처분요구서-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운영실태-'

## 2. 지역특구의 성과와 한계

**○(특구의 경제적 성과) 예산지원 없이 규제완화만으로 소득의 증가를 기록한 특구도 있지만, 특구 지정의 경제적 성과는 미미한 경우가 대부분임.**

- 아래 <그림 2>에서와 같이, '고창복분자산업특구'는 군 전체의 복분자 생산소득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09억여 원에서 287억여 원으로 증가했고, '문경오미자산업특구' 내의 특화사업자 매출도 같은 기간에 2배 가까이 증가함.
  - 반면, 영동포도산업특구, 충주사과특구, 안동산약마을특구는 특구내 사업자의 매출액 변화가 적었으며, 김천포도산업특구 내 사업자와 논산청정딸기산업특구 내 사업자는 같은 기간에 매출액이 오히려 감소함.

<그림 2> 2개 지역특구 특화사업자의 매출액 증가 ('04년~'06년)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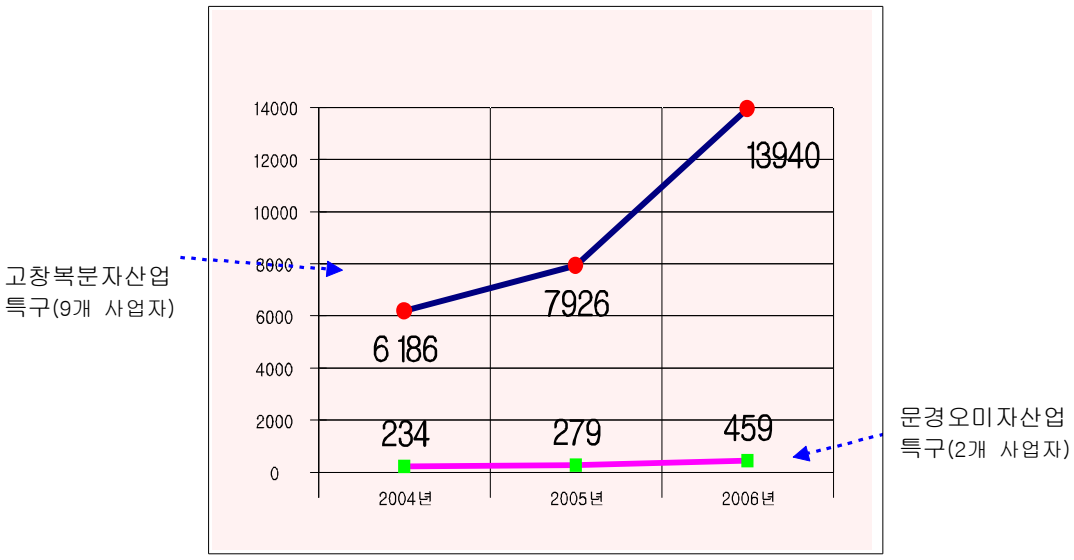


자료 : 감사원(2008.5), p.18

- 한편, 외국어교육 특구의 경우, 관내 초중고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하여 영어교육을 강화함과 아울러 학원수강비를 덜어주는 것인데, 아래 <그림 3>에 드러난 것처럼, 조사 대상이 된 전남과 경남의 6개 교육특구 중 김해만 감소했고 나머지 5개 특구는 오히려 사설학원 이용비율이 증가함.

<그림 3> 외국어교육 관련 지역특구 학생의 사설학원 이용비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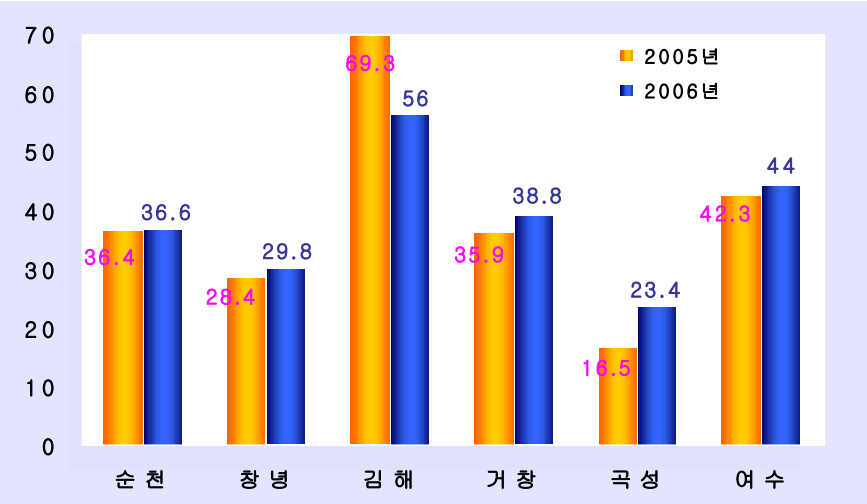


자료 : 감사원(2008.5), p.19

- 아래 <표 5>에서, **특구의 운영이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되는 전북 순창군과 고창군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추이를 살펴본 결과 순창군은 감소하고 고창군은 사업체 종사자가 증가하여 **반대되는 경향**[6]을 드러냄.
  - 반면, 특구가 없는 전북 군산시의 경우, '새만금사업'과 '군산공단 활성화'로 인해 사업체수와 종사자수가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토목·건설사업의 단기적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표 5> 특구없는 지자체와 특구가 활발한 지자체의 산업활동 비교

| |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
| 군산시 | 사업체 | 17,748 | 17,768 | 17,426 | 17,398 | 17,751 |
| | 종사자 | 69,620 | 69,521 | 69,290 | 71,260 | 78,193 |
| 순창군 | 사업체 | 2,084 | 2,047 | 1,972 | 1,963 | 1,957 |
| | 종사자 | 7,037 | 6,908 | 6,863 | 6,672 | 6,796 |
| 고창군 | 사업체 | 4,201 | 4,235 | 4,059 | 4,065 | 4,050 |
| | 종사자 | 13,597 | 13,855 | 13,702 | 13,965 | 14,917 |

자료: 통계청, 시군구 주요통계 주: 2007년도 자료는 잠정치.

6) 시군구별 지역내 총생산(GRDP) 및 일자리 데이터와 같이 특구의 경제적 성과를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아직 없어서 간접적인 자료만 가지고 평가하는 한계가 있음.

**○(규제특례의 실효성) 규제특례의 양은 늘었지만, 실효성 있는 규제특례와 규제완화는 별로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임.**

- 지역특구에 적용 가능한 규제특례를 초기 71종에서 최근 91종까지 늘렸지만, 적용 신청한 규제특례는 45종에 불과하며, 그 중 **24종만이 실제로 활용**됨.

<표 6> 지역특구법의 규제특례 적용 승인 및 실제 활용 현황

| 전체 규제특례 | 적용 신청 | | | 미신청 |
|---|---|---|---|---|
| | 계 | 활용 | 미활용 | |
| 91종 | 45종 | 24종 | 21종 | 46종 |

자료: 감사원(2008.5),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지역특구제도 운영실태-」

- 규제특례 91종 가운데 가장 실효성이 있어야 할 53종의 '규제완화 특례'가 실제로 규제완화 효과가 있었는지를 분석해 본 결과, 그 중 **10종만 제대로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7> 지역특구법의 규제완화 특례(53종)의 규제완화 효과 분석결과

| 규제완화 특례의 유형 | 종류 |
|---|---|
| □ 이미 폐지되어 완화될 필요가 없는 규제를 완화 | 2종 |
| □ 일반 법령의 예외규정과 같은 사항을 특례로 규정 | 16종 |
| □ 적용에 필요한 시행령 등을 제정하지 않아 적용 불가능 | 2종 |
| □ 관계기관 협의시기만 변경한 것을 규제완화로 규정 | 6종 |
| □ 적용대상 사항의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여 실효성 미약 | 9종 |
| □ 적용대상의 일부에 대해서만 규제완화 효과가 있음 | 8종 |
| □ 규제완화 효과가 있음 | 10종 |

자료: 감사원(2008.5), P.52

- 규제특례의 활용빈도를 살펴보면, '지역특화사업'의 본질적인 내용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다수 발견됨.
  · 아래 <표 8>에서 활용빈도가 가장 높은 특례를 살펴 본 결과, 일반규제특례 중에서는 옥외광고물 표시 및 설치와 도로교통 제한, 토지이용규제특례 중에서는 농지전용과 용도지역 변경, 그리고 권한이양특례 중에서는 식품표시기준고시 등으로서 특구사업의 본질적 내용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 대부분.

<표 8> 규제유형별 활용빈도가 높은 규제특례 현황

| 구분(69개) | 적용특례(36개) | 적용횟수 |
|---|---|---|
| 일반규제 특례(35개) | 옥외광고물표시·설치특례 | 46회 |
| | 도로교통제한 | 33회 |
| | 농지 위탁경영, 사용대·임대 | 24회 |
| | 도로점용 | 16회 |
| | 사증발급절차 및 체류기간 연장 | 13회 |
| 토지이용 규제특례 (26개) | 농지전용 | 11회 |
| | 용도지역 지정·변경 | 11회 |
| | 농업진흥지역 해제 | 8회 |
| | 도시계획시설 결정 | 6회 |
| | 산지전용 | 4회 |
| 권한이양 특례(8개) | 특화사업관련 식품표시기준 고시 | 22회 |
| | 등록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 | 6회 |
| | 등록 체육시설업 등록권한 | 6회 |

자료: 구 재정경제부(2006.12), '지역특구 2년의 성과와 과제', p.6에서 재인용

**O(특구의 다양성) 지역특구의 제도화에는 성공했으나, 유형별 다양화와 내실화는 아직 미흡함.**

- 지역특구를 도입한 지 4년여 만에 전국적으로 80개 기초 자치단체에서 102개의 지역특구를 운영하는 등 제도의 조기정착에는 성공했음.

- 그러나, '특구'라는 브랜드를 홍보용으로 활용하기 쉽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쉽기 때문에, 지방의 특산물을 활용한 향토자원진흥 특구(45개)와 관광-레포츠 특구(20개)가 전체의 2/3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대도시와 수도권에서의 활용도가 떨어져, **특구 유형의 다양화와 내실화**가 필요함.

<표 9> 유형별, 지역별 지역특구 지정 현황

| | 교육 | 산업-연구 | 의료-복지 | 관광-레포츠 | 향토자원진흥 | 유통-물류 | 합계 |
|---|---|---|---|---|---|---|---|
| 서울시 | 2 | | | | | 1 | 3 |
| 부산시 | | | | 2 | 1 | | 3 |
| 대구시 | | 2 | | | | 1 | 3 |
| 인천시 | 1 | | | 1 | 1 | | 3 |
| 울산시 | | | | | 1 | | 1 |
| 경기도 | 1 | | | 1 | 4 | | 6 |
| 강원도 | | 2 | 1 | 2 | 1 | | 6 |
| 충청북도 | | 1 | | 3 | 7 | 1 | 12 |
| 충청남도 | 2 | 1 | | | 6 | 1 | 10 |
| 전라북도 | | 1 | 2 | 1 | 6 | 1 | 11 |
| 전라남도 | 5 | | | 4 | 4 | | 13 |
| 경상북도 | 1 | 1 | | 3 | 10 | 4 | 19 |
| 경상남도 | 3 | 2 | | 2 | 4 | | 11 |
| 제주도 | | | | 1 | | | 1 |
| 합계 | 15 | 10 | 3 | 20 | 45 | 9 | 102 |

자료: 구 재정경제부 지역특구기획단 자료를 기초로 재작성

- 우리보다 1년여 앞서 2003년부터 시행된 **일본의 구조개혁특구**[7]는 교육-보육(27.6%) 및 생활-의료복지(26.5%) 관련 특구가 전체의 54.1%를 차지하고 있어, 자치단체가 중장기적 지역 환경의 개선과 인재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음.

<표 10> 일본 구조개혁특구의 유형별 현황

| **특구 유형** | 교육 | 도농교류 | 유아보육 | IT | 산업활성화 | 생활의료복지 |
|---|---|---|---|---|---|---|
| **건수*** | 183 (19.0%) | 87 (9.0%) | 83 (8.6%) | 65 (6.7%) | 63 (6.5%) | 255 (26.5%) |
| **특구 유형** | 농업 | 산학연계 | 지역활성화 | 국제교류관광 | 기타 | **합 계** |
| **건수*** | 110 (11.4%) | 40 (4.2%) | 28 (2.9%) | 8 (0.8%) | 41 (4.4%) | 963 (100.0%) |

주: 건수에는 해제된 특구까지 포함됨.

자료: 일본 내각부 구조개혁특구추진본부

7) 일본은 2007년 10월 현재까지 총 963개 구조개혁특구를 지정한 뒤 규제특례 211종 중 규제완화 효과가 있다고 평가된 120종의 규제특례를 전국에 확대 적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하면서 563개 특구를 해제하고 나머지 400개 특구를 운영하고 있음.

**○(민간 역량의 활용) 기초 자치단체 주도형 지역특구를 통해 지자체의 정책 개발 역량을 제고하는 데는 기여했지만, 민간기업과 비영리(NPO)법인의 특구 신청을 불허함으로써 민간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함.**

- 민간기업과 비영리법인의 특구 신청이 아직은 불허되고 있음에 따라, '지역특구'라는 틀 속에서 자치단체가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형편임.
  - 이처럼 민간 기업이 특구에 참여하도록 유인하는 규제특례의 범위가 협소함에 따라, 대도시 및 수도권의 특구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하며, 기업들의 역량을 활용하기 위한 '기업도시특별법'[8]이 2004년 말에 별도로 제정되었음.

- 아래 <표 11>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은 우리와 달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주식회사와 비영리법인도 특구를 신청하도록 했으며, **자치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었던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함으로써, 그동안 규제개혁이 미진했던 분야에서 상당한 규제완화가 이루어졌음[9].

<표 11> 일본의 구조개혁특구 중 민간역량을 활용한 항목 (예시)

| 특구 유형 | 주요 규제특례 항목 |
|---|---|
| □ 교육관련 특구 | - 주식회사 및 비영리(NPO)법인에 의한 학교설립 허용 (교육법)<br>교육과정 기준에 국한되지 않는 커리큘럼의 편성, 실시 허용 |
| □ 농촌활성화 관련 특구 | - 농업생산법인 외에 기업(주식회사)의 농업참여 허용 (농지법) |
| □ 의료복지 관련 특구 | - 기업의 특별 양호시설의 설치운용 허용 (노인복지법)<br>- 기업의 의료사업 참여 허용 (의료법) |

자료: 대한상공회의소(2007.11), 「지역특화발전특구 현황과 개선과제」, p.21

- 일본을 대표하는 음반·영상관련 기업인 (주)Tsutaya는 도쿄 치요타구의 입지적 특성을 활용하여,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전문직 대학 및 대학원을 설립하여 직접 운영 중임 ("캐리어교육특구")

8) 민간기업 주도로 경제 및 주거기능을 함께 갖춘 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난 2004년12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으며, 기업도시 시범사업 지역으로 2005년도에 전남 무안(산업교역형), 충북 충주(지식기반형), 강원 원주(지식기반형), 전북 무주(관광레저형), 충남 태안(관광레저형)과 전남 영암·해남(관광레저형) 등이 선정된 바 있음.

9) 대한상공회의소(2007.11), p.15

### 3. (가칭) 자율적 규제개혁특구로의 전환 방안 모색

□ **지역특구가 4가지 측면(①특구의 경제적 성과, ②규제특례의 실효성, ③특구 유형의 다양성, ④민간 역량의 활용)에서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지적했지만, **지역특구의 부분적 개선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으며 **자율적 '규제개혁특구'로의 본질적 전환이 필요한 이유는 아래와 같음.**

○ **첫째, '특별하지 않은 특구'와 중복적인 지역개발 지원제도로 인해, '지역특구' 제도를 일부 개선하더라도 '특구'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어려움.**

- 왜냐하면, 아래 [그림 4]와 같이, 각 부처별로 지역개발을 지원하는 제도와 사업이 중복 운영되고 있으며, '특별하지 않은 특구'가 산재해 있기 때문임.
  - 지식경제부에는 '지역연고사업', '지역특구', '연구개발특구', '경제자유구역' 등이, 농수산식품부에는 '향토산업육성사업'과 '원예·과수브랜드육성사업'등이, 문화관광부에는 '관광특구'가, 국토해양부에는 '기업도시'가, 지방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새만금개발특별법' 등이 있음

<그림 4> 지역특구의 이상과 현실, 그리고 규제개혁특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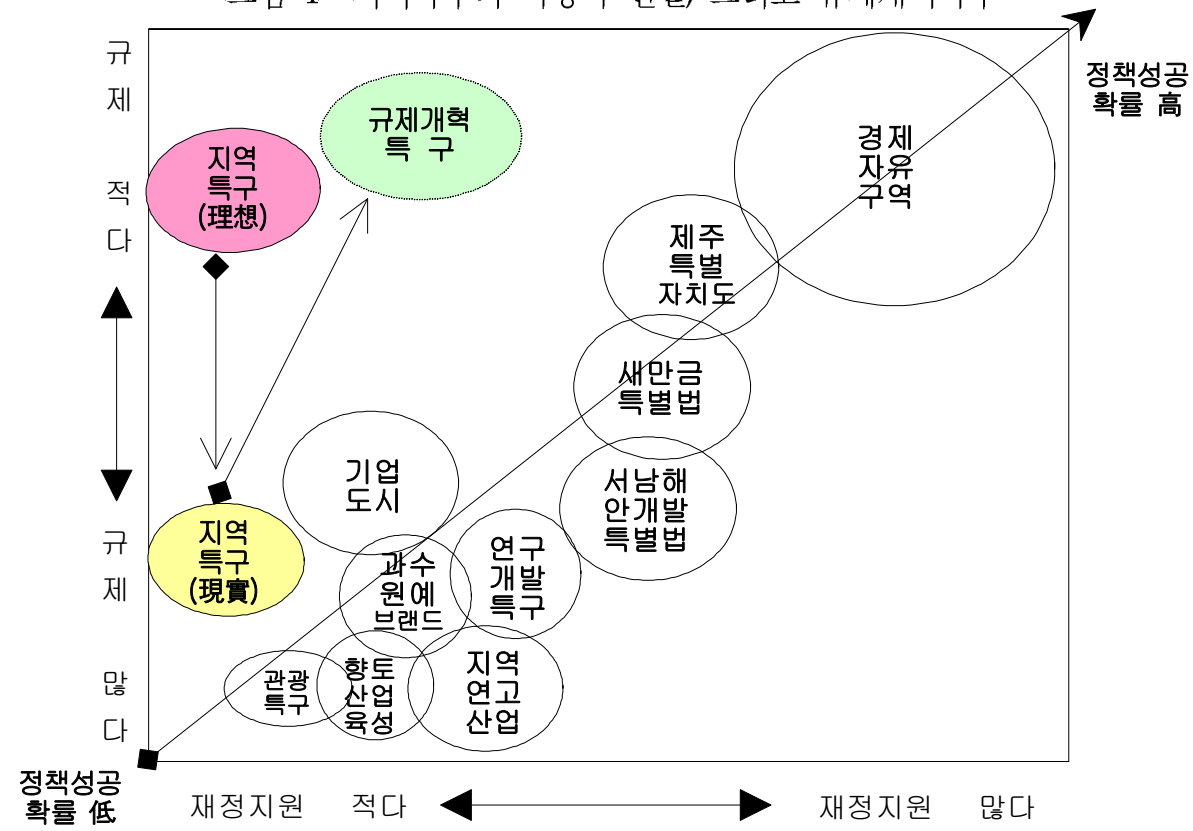

**○ 둘째, 지역특구제도의 추진체계가 특정부처의 개별 사업으로 그 위상이 저하됨에 따라 특구사업의 추진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임.**

- 과거에는 '경제부총리'의 통합적 지휘 하에서 '지역특구' 제도가 운영되었으나, 지금은 여러 국무위원 중 한 명인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역특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특구제도의 일부를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추진력이 과거와 같이 살아나기 어려움.

**○ 셋째, '지역특구법'의 취지가 규제개혁에 방점이 찍혀져야 하는데 지역개발에 갇혀 있음.**

-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탄생했다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지역**특산품과 관광자원을 홍보하기 위해 '특구' 브랜드가 악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표 12> 한국의 지역특구와 일본의 구조개혁특구 비교

| 구 분 | | 우리나라 지역특화발전특구 | 日本 구조개혁특구 |
|---|---|---|---|
| 목 적 | | ·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구<br>·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 | · 규제개혁을 통한 지방분권 및 지역경제활성화 자립 추구<br>* 02.12 고이즈미 수상 채택 |
| 근거법 | | 지역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br>(04.3.22제정, 9.23시행) | 구조개혁특별구역법<br>(02. 12월 제정.시행, 2차 개정) |
| 추진부처 | | 지식경제부내 지역특구기획단 | 내각부내 총리직속 구조개혁추진실 |
| 특구신청 | | 지자체(시군구, 시군구+시도)<br>* 특구제안 : 별도 제안제도 없음 | 지방공공단체(도도부현, 시정촌, 일부사무조합, 광역연합)<br>* 특구제안 : 지방공공, 민간사업자 |
| 특구지정 | | 지역특구위원회 심의의결<br>⇒ 지경부장관 고시 | 내각총리대신 인정 ⇒ 공표<br>(신청접수 후 관계행정기관 동의) |
| 운영·특징 | 규제특례 방식, 수 | 지자체가 특구내 적용될 특례 선택<br>* 규제특례 수 91종 | 좌 동<br>* 규제특례 수 211종<br>(전국화된 특례 120종 포함) |
| | 규제특례 주 도 | 중앙정부 ⇒ 지방정부<br>* 연1회 수요조사 후 특례확대 | 좌 동<br>* 연2회 수요조사 후 특례확대 |
| | 특구사업 전 개 | 특정지역 지자체에 한정 추진 | 특정지역 및 사업의 전국화추진<br>(규제특례 전국화) |
| | 지 정 특구수 | 102개 ('08.7월) | 963개 ('07.11월) (* 규제특례 전국화로 해제된 563개의 특구도 포함) |
| | 특구형태 | · 지방에 집중 (대도시, 수도권 미흡)<br>- 향토자원, 관광 및 레포츠 위주 | · 수도권 중심 지자체에 집중<br>- 교육, 보육, 의료-복지 위주 |
| | 지원여부 | 재정 · 세제 지원 없음 | 좌 동<br>* 지역재생사업 병행가능(교부금 지원) |

자료: 구 재정경제부 지역특구기획단 자료를 기초로 재작성

○ **넷째, 지역개발이 아니라 규제개혁에 집중하여 성공한 일본의 구조개혁특구를 보면, 지역특구를 규제개혁특구로 전환해야 할 이유가 더 분명해짐.**

- 앞의 <표 12>에 나타나 있듯이, 일본의 성공요인은 지역에 얽매이지 않고 규제의 전국화에 집중했고, 규제개혁에 방점을 찍었으며, 민간의 역량을 활용했다는 점. 아울러, 지자체의 높은 자율권도 우리와 다른 성공요인임.
  · 양적으로(우리는 약4년(04~08년)간 102개의 특구, 일본은 5년(03~07년)간 963개 특구), 그리고 질적으로(일본이 전국화한 규제특례 120종을 포함 211종의 규제특례를 적용, 우리는 91종) 일본의 구조개혁특구가 더 성공적이었음.

□ **따라서, 지역특구를 (가칭)'규제개혁특구'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제도의 성패를 핵심적으로 좌우하는 '규제특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에 특히 유의해야 함.**

○ **첫째,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규제특례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아울러 의료-복지, 산업-연구개발, 교육 분야의 특구를 지원할 수 있는 특례를 중심으로 발굴해야 함.**

- 총102개 특구 중 2/3가 특산품 등 향토자원 중심이며, '특구'를 홍보 브랜드로 확보하기 위한 형식적 특구 신청과 '규제특례'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 지역특구의 본질적인 사업과 무관한 '도로통행 제한', '옥외광고 표시 및 설치 제한', '식품표시기준 고시' 등의 특례를 형식적으로 적용해서는 곤란.

-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규제특례를 중심으로, 예를 들면, '의료-복지'와 '산업-R&D', '교육' 분야의 특구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실효성 있는 규제특례를 중심으로 발굴해야 함.

○ **둘째, 지역특구에서 성공적인 규제특례를 전국의 자치단체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규제특례의 전국化' 모델을 도입해야 함.**

-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특례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규제특례'가 성공적일 경

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규제특례의 전국화' 모델을 도입해야.

· 우리가 제도를 벤치마킹한 일본의 경우, 전국화된 120개의 규제특례를 포함하여 모두 211개의 규제특례를 적용 가능하도록 제시한 바 있음.

**○ 셋째, 정부기관 주도의 규제특례 수요조사를 민간·경제단체 중심으로 전환해야 함.**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에서 제안한 (가칭)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완화 시범과제'를 '지역특구'에 적용해보고, 성공적일 경우 전국적으로 적용('규제완화의 전국화')하는 방식임.

· 즉, 지금처럼 정부 부처나 시군구 등 정부기관을 통해 규제특례의 수요조사를 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민간·경제단체를 통해 규제완화의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지역특구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방식.

<표 13> 지역특구와 (가칭) 자율적 규제개혁특구의 차별성

| 구 분 | | 지역특구 | (가칭) 자율적 규제개혁특구 |
|---|---|---|---|
| 취 지 | | ·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br>·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 | ·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선진화 추진<br>· MB정부 '규제완화, 경제살리기' 일환 |
| 근거법 | | 지역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 (가칭) 규제개혁 특별구역법 |
| 담당부처 | | 지식경제부 지역특구기획단 | 총리실 규제개혁추진단<br>(현재 '규개위'와의 통합·조정 필요) |
| 특구신청 | | 지자체(시군구, 시군구+시도) | 지자체뿐만 아니라,<br>민간사업자와 비영리법인도 가능. |
| 특 징 | | - 지역특화사업에 중점<br>- 규제특례는 형식적 | - 규제개혁에 중점<br>(지역특화사업은 기존의 지역개발 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추진함)<br>- 규제특례의 실효성 제고에 역점 |
| 운영 | 규제특례 수요조사 | 정부 중심<br>(중앙정부 ⇒ 지방정부,<br>연1회 수요조사 후 특례확대) | 민간 중심<br>(민간단체 ⇒ 지방정부 ⇒ 중앙정부,<br>연2회 수요조사 후 특례확대) |
| | 운영주체 | - 지방자치단체 (+ 특화사업자) | - 지방자치단체 + '産-學-硏-官 네트워크'<br>(각 특구별로 '산-학-연-관 네트워크'의 구성 및 운영을 의무화하고, 이를 특구지원기구로 활용함.) |
| | 규제특례 전국화 | 전국화 모델 없음<br>(특정지역 지자체에 한정) | 전국화 모델 도입<br>(특구에서 성공적인 규제특례를 전국화) |
| | 예산지원 | 재정·세제 지원 없음 | 他 예산지원사업과 연계를 의무화<br>(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향토산업진흥사업<br>과수원예브랜드지원사업 등) |

자료: 구 재정경제부 지역특구사업단 자료 및 본 보고서의 3장, 4장 내용에 기초하여 작성

## 4. (가칭) 자율적 '규제개혁특구'의 성공요인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율적 **규제개혁특구의 핵심 성공요인은 바로 '규제특례'의 실효성**에 달려 있으며, 나아가 **진정한 지방자치권의 확립과 연계**되어 있음. 이하에서는 **그 밖의 제도적 성공요인**을 살펴보았음.

- 새 정부가 지난 7월21일 발표한 '지역발전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과 예산에 있어서 실질적인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규제완화와 권한이양**을 추진하는 것이 근본 해법임.

○ **첫째, (가칭) 자율적 규제개혁특구의 소속을 총리실로 이전하고, 총리실 산하의 '규제개혁위원회'와 통합(또는 역할 분담)을 검토해야.** 이를 통해 규제개혁특구가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규제완화 및 투자활성화의 창구로 활용되어야 함.

- 규제특구의 추진체계를 변경하여 '지역특구기획단'의 소속을 현재의 지식경제부에서 '총리' 직속으로 이전하고, 총리실 산하의 '규제개혁위원회'와 통합 또는 역할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그리고, 국회 내에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전략 차원에서 규제개혁을 지원해야 함. 즉, 규제를 하는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규제를 당하는 국민, 기업, 민간단체 등의 입장에 서야 규제를 혁파할 수 있을 것임.

- 일본의 경우, 내각부(우리 '총리실')에 '구조개혁특구추진실'을 설치하여 특구 추진업무를 일원화했으며, 고이즈미 총리 자신이 본부장을 맡는 '구조개혁추진본부'를 설치함[10].
  - 이러한 추진체제는 각 지역으로부터 특구사업을 위한 규제완화 요청이 있을 경우, 실질적으로 규제업무를 관장하는 중앙부처의 개입을 최소한도로 억제하려는 의도에서 전개되었으며, 특구실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임.

10) 이홍배(2003.9), '일본 지역특구의 특징과 한국에의 시사점',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82

**○ 둘째, 각 지역별로 특구의 성공을 지원하는 産-學-硏-官 네트워크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농촌지역이나 낙후된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민관 합동기구로서 발전시킴.**

- 특구의 운영주체가 지자체 중심이다 보니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우수한 인력과 자금, 노하우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한계에 봉착하고 있음. 따라서, 농민, 기업, 연구소, 학교, 지자체 등 관련 그룹간의 유기적 협력체계가 긴요함.

- 이러한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영국의 TCM[11], 일본의 TMO[12] 같은 '특구활성화지원' 전담기구(ZMO; Zone Management Org.)로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시점.

**○ 셋째, 기업도 '규제개혁특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함.**

- 지자체의 역량으로 수행하기 힘든 '지역특화 사업'은 기업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해줘야 함. 즉,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특화사업을 기획·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함.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가 지역특구의 모델로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일본의 '구조개혁특구'에는 다수의 민간 기업이 '구조개혁특구'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음.

11) 영국의 TCM(Town Centre Management)은 1970년대말 대형마트의 입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이후 1980년대 후반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직으로 태동돼, 1990년대 후반 본격화. TCM은 반관반민(45%), 지자체 주도(26%), 완전 지자체 운영(10%), 민간주도(10%)형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고객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차시설 등 다양한 시설설치 및 개선, 레저, 오락시설, 교육·문화시설 개발 등을 통한 상권의 매력 증대 등의 역할을 수행중. 재원은 민간부담금과 정부 및 지자체 보조금 등으로 충당.

12) 일본의 TMO(Town Management Organization)는 대형 소매점의 교외 이전으로 중심시가지가 쇠퇴할 것에 대비해 교외의 쇼핑센터가 갖는 '총체적 관리'의 개념을 중심시가지에 도입한 것. 업종별 규모별 점포의 구성과 배치를 비롯해 핵심 점포의 유치, 주차장 및 포켓공원 등 기반시설 배치 계획, 신용카드화, 일괄 택배서비스, 공동이벤트 등을 진행.

O

O ,

( 13)

,

.

.

( )

XZP ¤8°., >Qh2e8t :ô7! 8 2l3LÝ=*° :88¨ d 88F¨ :0-02l8Œ XWL*° 8Äd FÙ7 !Ý.´ FG¤È !è7Ý8x 8Ä)• FG¤È 2l-É P9l8x >È¤ø :E8¨+¤S2l-É P9l8¨ 8¨*8:ü ñ7ä 8¨*¨ +¨ YWW'x .´ Bd FÙ2l 4 .., Ý 4 4 %¤ É #üGpÀ8¨8Ä8¨4 ,l ‰ƒ‡}- Š ª† ,• ¤¨ YWW'x `8 \8°8Ä)• .( $øF• -H 8½8€"¢c1@Õ]1@Ý Ñ à

[별표 2] **유형별 시도별 지역특구 지정 현황**

| 유 형 | 시·도 | 지역특구명 |
|---|---|---|
| 향토자원진흥특구(45) | 부산(1) | 기장 미역·다시마특구 |
| | 인천(1) | 강화 약쑥특구 |
| | 울산(1) | 울주언양·봉계 한우불고기특구 |
| | 경기(4) | 이천 도자산업특구, 양평 친환경농업특구, 고양 화훼산업특구, 여주 쌀산업특구 |
| | 강원(1) | 원주 옻·한지산업특구 |
| | 충북(7) | 충주 사과특구, 괴산 청정고추산업특구, 영동 포도와인산업특구, 영동 감고을감산업특구, 옥천 묘목산업특구, 옥천 옻산업특구, 음성 다올찬친환경수박특구 |
| | 충남(6) |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논산 양촌곶감특구, 청양 고추·구기자산업 특구, 강경 발효젓갈산업특구, 예산 황토사과특구, 서천 한산모시산업특구 |
| | 전북(6) | 순창 장류산업특구, 고창 복분자산업특구, 고창 경관농업특구,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부안 누에타운특구, 김제 총체보리한우산업특구 |
| | 전남(4) | 함평 나비산업특구, 정남진장흥 생약초한방특구, 보성 녹차산업특구 광양 매실산업특구 |
| | 경북(10) | 안동 산약(마)마을특구, 상주 곶감특구, 김천 포도산업특구, 김천 자두산업특구, 문경 오미자산업특구, 경산 종묘산업특구, 울진 로하스웰빙농업특구, 영양 고추산업특구, 포항 구룡포과메기산업특구, 청도 반시나라특구 |
| | 경남(4) | 산청 지리산약초연구발전특구, 함양 자연건강식품산업화특구, 남해 귀향마을특구, 하동 야생녹차산업특구 |
| 관광·레포츠특구(20) | 부산(2) |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부산동구 차이나타운특구 |
| | 인천(1) | 인천중구 차이나타운특구 |
| | 경기(1) | 연천 고대산평화체험특구 |
| | 강원(2) | 태백 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 화천 평화·생태특구 |
| | 충북(3) | 청주 직지문화특구, 충주 수상레포츠특구, 제천 에코세라피건강특구 |
| | 전북(1) | 부안 영상문화특구 |
| | 전남(4) | 여수 오션리조트특구, 여수 시티-파크리조트특구,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 정남진장흥 문학관광기행특구 |
| | 경북(3) | 영양 반딧불이생태체험마을특구, 봉화 파인토피아특구, 영덕 대게특구 |
| | 경남(2) |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 고성 체류형레포츠특구 |
| | 제주(1) | 국토최남단마라도 청정자연환경보호특구 |

| 유 형 | 시 · 도 | 지역특구 명 |
|---|---|---|
| 교육 관련 특구 (15) | 서울(2) | 서울노원 국제화교육특구, 서울중구 영어교육특구 |
| | 인천(1) | 인천서구 외국어교육특구 |
| | 경기(1) | 군포 청소년교육특구 |
| | 전남(5) | 순천 국제화교육특구, 곡성 21세기농촌교육선진화특구, 여수 관광국제화교육특구, 강진 외국어교육특구, 광양 국제화평생교육특구 |
| | 충남(2) | 아산 국제화교육특구, 천안 국제화교육특구 |
| | 경북(1) | 영주 글로벌인재양성특구 |
| | 경남(3) | 김해 평생교육특구, 창녕 외국어교육특구, 거창 외국어교육특구 |
| 산업 클러스터/ 연구개발 특구 (10) | 대구(2) | 대구 패션주얼리특구, 대구 안경산업특구 |
| | 강원(2) |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강릉 싸이언스파크특구 |
| | 충북(1) | 단양 석회석산업발전특구 |
| | 충남(1) | 태안 종합에너지특구 |
| | 전북(1) | 부안 신·재생에너지산업클러스트특구 |
| | 경북(1) | 영덕 청정에너지특구 |
| | 경남(2) | 고성 조선산업특구, 거창 화강석산업특구 |
| 유통/ 물류특구 (9) | 서울(1) | 동대문 약령시한방산업특구 |
| | 대구(1) | 대구 약령시한방특구 |
| | 충북(1) | 제천 약초웰빙특구 |
| | 충남(1) | 금산 인삼헬스케어특구 |
| | 전북(1) | 진안 홍삼·한방특구 |
| | 경북(4) | 영천 한방진흥특구, 성주 참외산업특구, 의성 마늘산업유통특구, 상주 고랭지포도특구 |
| 의료/ 사회 복지특구 (3) | 전북(2) | 익산 한·양방의료연구단지특구,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 |
| | 강원(1) | 홍천 리더스카운티특구 |

자료: 감사원 (2008.5) 자료에 기초하여 재작성

## 참고 자료

한국자치경영평가원(2005),『지역특화발전특구의 성공을 위한 운영모델 개발』
구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2006), '지역특구 2년의 성과와 과제', 2006.12.19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감사원(2008),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운영실태-', 2008.6
대한상공회의소(2007), '지역특화발전특구 현황과 개선과제', 2007.11
이홍배(2003.9), '일본 지역특구의 특징과 한국에의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일본 구조개혁특구의 특징과 시사점', 자치행정 3월호, 2005년

법제처 종합법령정보센터(http://www.klaw.go.kr)

中見利男(2003),『構造改革特區を事業チャンスに生かす方法 : 全分野を丸ごと解說』, 中經出版
日本經濟新聞, 2007년9월5일자 記事 (현대경제연구원, 「Chairperson Note 07-36」( 2007.9.7)에서 재인용)

## 주간 경제 동향

### □ 실물 동향 : 생산자물가 상승세 지속

**○ 7월 중 생산자물가는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산품과 서비스의 오름세 지속으로 전월대비 1.9%, 전년동월대비 12.5%로 상승하였음**

- 공산품은 전자부품 및 통신장비제품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원재료비 상승으로 인한 화학제품 및 1차 금속제품 상승세로 전월대비 2.4%, 전년동월대비 17.9% 상승하였음

- 농림수산품은 폭염에 따른 채소류의 출하감소와 닭고기, 계란 등의 계절적 수요증가로 전월대비 1.5%, 전년동월대비 1.0% 상승하였음

- 서비스는 금융(-4.0%)과 광고(-1.7%)부분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운수(5.9%), 전문서비스(0.9%), 기타서비스(0.8%) 등의 부문이 호조를 나타내어 전월대비 1.3%, 전년동월대비 3.2% 상승하였음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 | | | 2006 | 2007 | | | 2008 | | | |
|---|---|---|---|---|---|---|---|---|---|---|
| | | | | 연간 | 3/4 | 4/4 | 1/4 | 2/4 | 6월 | 7월 |
| 경기 | | 경제성장률 | 5.1 | 5.0 | 5.1(1.5) | 5.7(1.6) | 5.8(0.8) | 4.8(0.8) | - | - |
| | 수요 | 소비재판매 | 4.1 | 5.3 | 7.1 | 4.5 | 3.9 | **2.5** | -1.0 | - |
| | | 설비투자추계 | 8.9 | 8.6 | 0.7 | 9.2 | -0.9 | 0.1 | 4.4 | - |
| | | 건설수주 | 9.0 | 19.3 | -5.6 | 29.5 | -3.9 | -6.1 | -23.4 | - |
| | | 수출 | 14.4 | 14.1 | 9.9 | 18.2 | 17.3 | 23.4 | 17.0 | - |
| | 공급 | 광공업생산 | 8.3 | 6.8 | 6.0 | 11.0 | 10.6 | 8.6 | 6.7 | - |
| | | 취업자수(만명) | 2,315 | 2,343 | 2,361 | 2,358 | 2,305 | 2,387 | 2,396 | - |
| | | 실업률 | 3.5 | 3.2 | 3.1 | 3.0 | 3.4 | 3.1 | 3.1 | - |
| | | 수입 | 18.4 | 15.2 | 7.5 | 25.9 | 28.3 | 29.9 | 32.3 | - |
| 대외거래 | | 경상수지(억$) | 54 | 60 | 44 | 32 | -52 | -1 | 18.2 | - |
| | | 무역수지(억$) | 161 | 146 | 45 | 27 | -59 | 1 | -4 | - |
| 물가 | | 생산자물가 | 0.9 | 1.4 | 1.2 | 3.0 | 5.1 | 9.0 | 10.5 | **12.5** |
| | | 소비자물가 | 2.2 | 2.5 | 2.3 | 3.4 | 3.8 | 4.8 | 5.5 | **5.9** |

주 : 경제성장률의 ( )안은 계절조정 전기비 기준, 진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임.

## □ 금융 동향 : 원화 환율 상승 압력 고조

**○ (해외 금융 시장) 인플레이션 우려로 유로화 약세**

- **금리** : 유가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지속 가능성 등으로 전주말 대비 약보합 시현 (국채 10년물 : 3.93→ 3.92%)
- **환율** : 미국의 미결주택판매가 예상치를 상회한 가운데 유럽과 일본의 경기둔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달러화 강세 ($/€ : 1.5564→1.5325, ¥/$ :107.71→ 109.44)

**○ (국내 금융 시장) 기준금리 인상불구 국고채 금리 소폭 하락**

- **주가** : 주초반 국내 조선업체들에 수주 취소 등의 영향으로 1,536p까지 하락한 이후 국제유가 하락 및 저가매수세 유입에 따라 반등세를 보였으나 전주말 대비 소폭 하락 (1,573.7→1,568.7)
- **금리** : 금통위의 기준금리 0.25%인상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금리 인상이 기반영된데다 경기둔화우려감 등으로 전주말 대비 소폭 하락 (국고채 3년 수익률, 5.72→5.70%)
- **환율** : 외환당국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 반등의 영향으로 역외 세력이 대량으로 역외선물환을 매수함에 따라 전주말 대비 상승 (1,014.6→1,027.9)

**○ (전망) 유가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한 원화 환율의 상승세 지속 전망**

< 주요 금융 지표 >

| | | 2006 | 2007 | | | | 2008 | | |
|---|---|---|---|---|---|---|---|---|---|
| | | 4/4 | 1/4 | 2/4 | 3/4 | 4/4 | 1/4 | 8.1 | 8.8[1)] |
| 국내 | 거래소 주가 | 1,434.5 | 1,452.5 | 1,743.6 | 1,946.5 | 1,897.1 | 1,703.9 | 1,573.7 | **1,568.7** |
| | 국고채3년(%) | 4.92 | 4.76 | 5.26 | 5.46 | 5.74 | 5.10 | 5.72 | **5.70** |
| | 원/달러 | 929.8 | 940.9 | 923.8 | 915.1 | 936.1 | 990.4 | 1,014.6 | **1,027.9** |
| 해외 | DOW | 12,463 | 12,354 | 13,409 | 13,896 | 13,265 | 12,263 | 11,326 | **11,431** |
| | Nikkei | 17,226 | 17,288 | 18,138 | 16,786 | 15,308 | 12,526 | 13,095 | **13,125** |
| | 미국채10년(%) | 4.70 | 4.57 | 5.02 | 4.59 | 4.02 | 3.41 | 3.93 | **3.92** |
| | 일국채10년(%) | 1.69 | 1.60 | 1.88 | 1.69 | 1.51 | 1.29 | 1.52 | **1.53** |
| | 달러/유로 | 1.3199 | 1.3354 | 1.3542 | 1.4267 | 1.4593 | 1.5788 | 1.5565 | **1.5325** |
| | 엔/달러 | 119.07 | 117.83 | 123.18 | 114.80 | 111.65 | 99.70 | 107.71 | **109.44** |
| | 두바이($/배럴) | 56.71 | 63.12 | 66.42 | 76.64 | 89.06 | 97.66 | 120.40 | **115.30** |

주 : 1) 해외지표는 전일(8.7) 기준